

부안해오름유치원 규칙

[제정] 2006. 5. 2. 제1호
개정 2010. 4. 29. 제2호
개정 2012. 3. 19. 제3호
개정 2013. 2. 22. 제4호
개정 2014. 2. 27. 제5호
개정 2015. 2. 16. 제6호
개정 2017. 2. 16. 제7호
개정 2019. 2. 25. 제8호
개정 2020. 12. 22. 제9호
개정 2023. 10. 19. 제10호
개정 2024. 2. 5. 제11호
개정 2024. 7. 11. 제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유치원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부안 해오름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유치원은 부안해오름유치원(이하 “우리 유치원”이라 함)이라 한다.

제3조(위치) 우리 유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석정로 313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우리 유치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희망할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변동시 협의, 결정한다.

제5조(학기) 우리 유치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우리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
3. 토요일휴업일
4. 유치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5. 하계휴가, 동계휴가, 학년말 휴가
6. 개교기념일: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적용 따름)
7. 기타 임시 휴업일(원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조(학급편제) 우리 유치원의 학급은 연령별로 구성하며 당해년도 학급 배정에 의한다.

제8조(학급정원) 우리 유치원의 유아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급당 유아수용지표에 따른다.

제4장 교육내용

제9조(교육내용) 우리 유치원은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에 따라 2019 개정 누리과정 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며, 교육 내용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으로 한다.

제5장 생활지도

- 제10조(생활지도)** ① 유아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2023-30호)제2장 제4조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② 유아의 훈육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2023-30호)제2장 제8조에 ①~⑥따라 유아를 훈육하되, 휴대전화, 녹음기 등 전자기기, 현금, 귀금속 등의 금지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제6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제11조(수업일수 등) ① 우리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10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범위내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1조 제1항·제3항).
-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며, 이 경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제12조 제2항)

1.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3. 감염병 심각 경계 단계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③ 우리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및 기타 출석 인정 일수는 당해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④ 우리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나 관할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①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 : 1일 4~5시간 이내의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2.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해당연도 관할청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운영

②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 운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전출,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시기) ① 3월 초에 입학할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수가 미달일 경우 중도에 입학할 수 있다.

② 신입유아 선발은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계획」에 따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한다.

제14조(입학자격) 우리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① 장애유아를 차별하지 않으며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라 수용한다.

제15조(입학)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기간 중 최초로 유치원에 들어감

제16조(재학) 당해 유치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제17조(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① 재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② 편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다른 유치원에 다시 들어감

③ 전입학: 다른 유치원 유아가 우리 유치원 재학생이 됨

제18조(전출)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김

제19조(휴학, 복학)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 ①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②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유치원에 들어옴

제20조(면제, 유예, 재취학) 면제, 유예, 재취학은 특수교육대상유아에만 해당한다.

- ① 면제: 「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②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③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제21조(자퇴, 퇴학)

- ① 자퇴: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의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② 퇴학: 유치원규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하는 것으로 유아가 다음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제22조(수료 및 졸업) 수료 및 졸업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에게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

제23조(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한다.

제24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장 규칙 개정

제25조 (규칙 개정) 규칙의 개정은 교직원 협의 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0년 4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12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칙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칙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